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

2021. 9. 10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1. 연구배경

-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초기업교섭은 가능한가?
- 전통적인 노동조합과의 차이점
-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초기업교섭은 지속하고, 확산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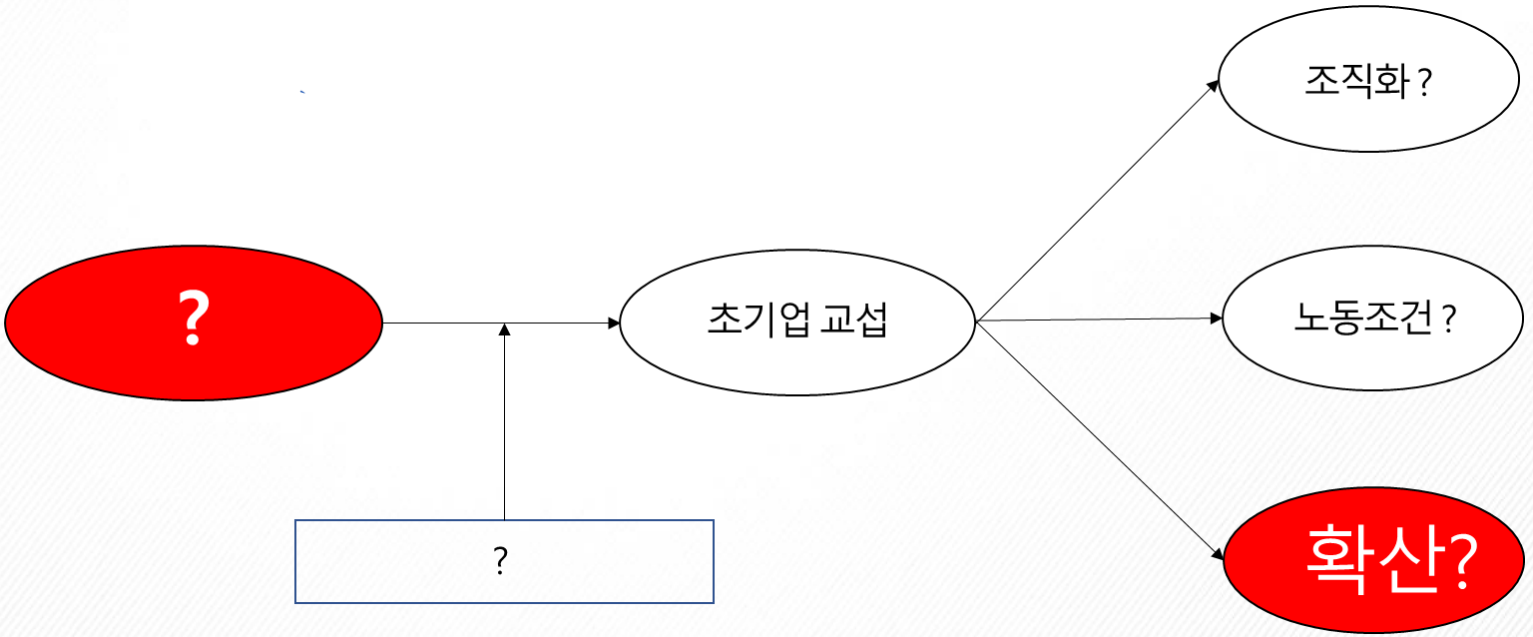

2.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조합 현황

· 특수고용노동조합

·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설립, 설립신고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ILO 협약비준을 계기로 2020년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

	노동조합	노조설립일 ( )교부일	비고 ( )는 교부기간
1	경기보조원노동조합	(1999.10.7.)	
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00.11.28.)	
3	화물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2002.10.27.	
4	건설노조	(2007.3.6.) (2021.3.22.)	재교부
5	택배연대노동조합	2017.1.8. (2017.11.3.)	
6	경마기수노동조합	(2020.5.22.)	
7	코웨이지부(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2020.5.30.)	방문판매 최초 (103일)
8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2020.7.17.)	(429일)
9	방과후강사노동조합	(2020.9.18.)	(477일)
10	보험설계사노동조합	(2020.12.31.)	(471일)
11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	(2019.4.9.)	서울시 교부

2.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조합 현황

· 플랫폼노동조합

· 배달업종과 디지털 창작노동, 플랫폼 운전 노동자를 제외하면 노동조합 조직화가 활발하지 않음

·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 받고 이후 전국단위노조로 인정을 받으며 배민라이더스지회, 웹툰작가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에 비해 이해대변의 갭이 존재함

	노동조합 이름	노조설립일	
1	라이더유니온	(2020.11.10.)	
2	배민라이더스지회(서비스일반노조) 쿠팡이츠지회(서비스일반노조)	2020.12	
3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전국여성노조)	2019.2.3.	법외노조
4	웹툰작가노동조합	(2020.12.17.)	
5	플랫폼운전자지부(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2021.2.26.	
6	플랫폼배달지부(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2021.8.24.	

3.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

· 특수고용 노동의 쟁점

1) 오분류 (노동자를 특고로 분류한 경우) 대책

2) 사용자의 교섭 의무 부여 방안

3) 고용원이 없는 진성 자영업자까지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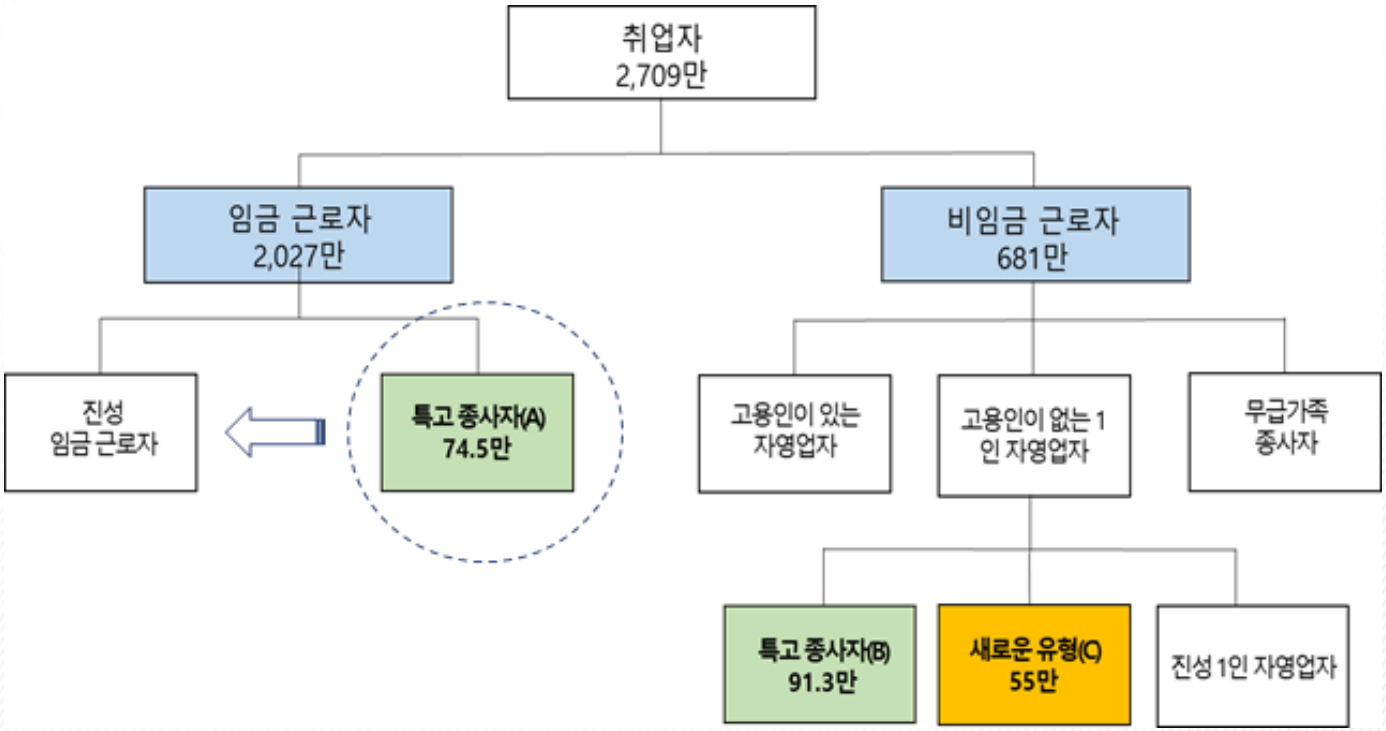

3.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

· 플랫폼 노동의 쟁점

1)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와 관리에 대한 해석

2) 빅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일방적 계약(수수료 부과)에 대한 협의

3) 기업의 책임과 사회(국가)적 책임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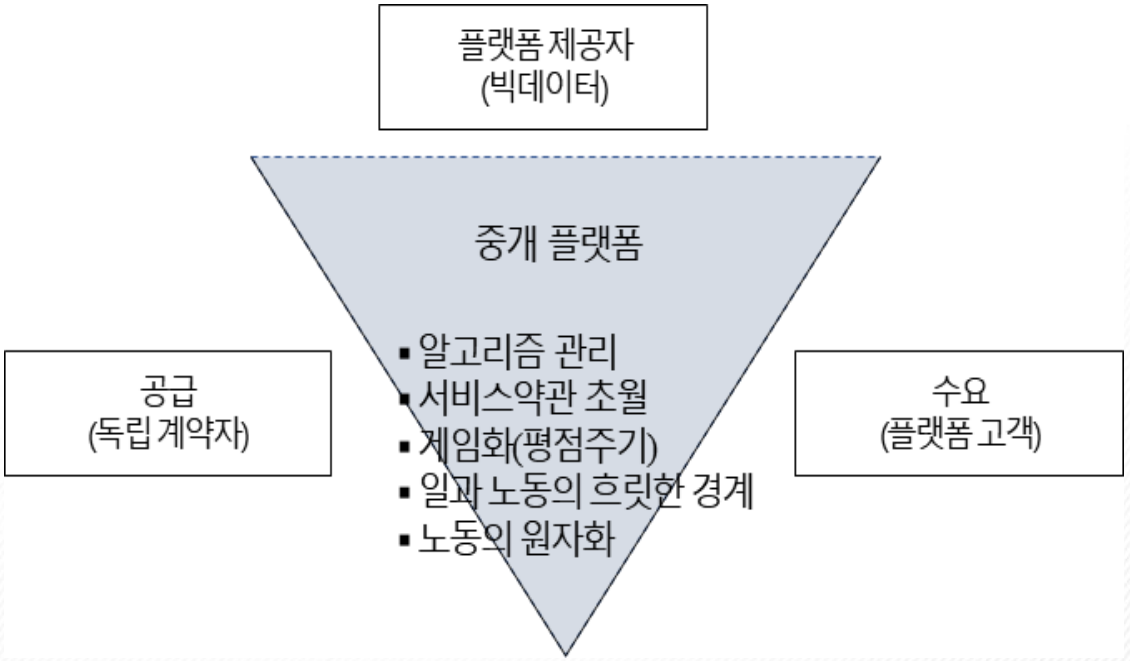

3.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 해외사례

· 스웨덴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산별노조 간 대각선(공동교섭)이 진행 중

– 수수료,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협약

플랫폼	단체협약의 지위 내지 성격
Bzzt (오토바이 이용 개인 운송 플랫폼)	Bzzt 플랫폼과 스웨덴운송노련(STWU) 간 단체협약. 기존 택시 노동자 단협에 준하되, 시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함.
Instajobs (대학생이나 높은 숙련 보유자를 위한 플랫폼)	Instajobs 플랫폼과 Unionen(화이트칼라 노조) 간 단체협약. 기존 임시 위탁 계약자(temporary agency workers)를 위한 단협을 적용함.
Gigstr (저숙련자, 미숙련자를 위한 플랫폼)	Gigstr 플랫폼과 Unionen(화이트칼라 노조) 간 단체협약. 기존 임시 위탁 계약자(temporary agency workers)를 위한 단협을 적용함.

자료: 강수돌(2020)

4. 사례: ① 배민라이더스 지회 공동교섭 배경

- 2019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배민라이더스지회 결성 (당시 100여명 조합원 확보)
- 2020년 4월 23일 단체교섭 시작 (라이더유니온의 교섭요구로 시작)
- 교섭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포럼의 긍정적 기여가 존재
-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 노동조합은 노조인정과 처우개선으로 방향

"사회적포럼은 연맹주도로 시작되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가 참여하였고, 배달의민족도 참여하였다. 노사가 각자 목적이 있었다. 회사는 이미지 개선, 노동조합은 조직화와 노조인정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다고 본다.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섭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배민지회간부)

4. 사례: ① 배민라이더스 지회 공동교섭 결과

조항	내용	비고
교섭단체	회사는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배송환경과 배송조건 및 조합활동권리에 대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1조
배송대행 기본계약서 등의 제·개정	회사가 조합원의 배송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배송대행 기본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4조
배차중개수수료	회사는 현재 조합원에게 지급받고 있는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
배차	회사는 일반모드, AI모드 어느 한쪽에 우선하여 배차하지 않는다.	제20조
초상권	회사는 조합원의 초상권을 위해 고객 주문앱 상 초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21조
배송 중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장의 사유로 음식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산업안전	신규 입직자 1개월 이내 안전교육 실시, 라이더의 경우 반기별로 안전교육 실시,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비 지급	제24조
기타 복리후생	1년 이상 라이더의 건강검진 비용(10만원)지원, 피복비 지원, 사고 로 오토바이 반납 시 렌탈비 면제, 1년 이상 라이더 설, 추석 선물 지급 등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4. 사례: ① 배민라이더스 지회 공동교섭 시사점

1) 교섭의 성과

- 노조조직화 100명 -> 500명 증가
- 확산의 파급효과 존재: 2021년 쿠팡이츠지회 설립이후 쿠팡이츠-라이더유니온 공동교섭단을 꾸려 공동교섭을 진행 중
- 안정적인 교섭 토대 확보: 매월 1회 정책협의, 2021년 교섭 준비

2) 시사점

- Gig work 의 초기업교섭 가능성을 한국 사례에서 확인
- 교섭결과: 배달노동자의 처우 개선, 인권 보호, 노동안전 합의

3) 과제

- 통일교섭으로 발전
-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과 등 제도정비

4. 사례: ② 화물연대 초기업교섭 배경

· 2003년부터 <표준요율제>도입을 위해 노력,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운임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결정.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대표(3명), 운수사대표(3명), 노동조합(3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 중앙수준에서 안전운임제가 확정된 이후 지역 차원에서 집단교섭 형태의 초기업 사례가 다수 나타남

·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가 지역수준에서 초기업 교섭을 통해 구체화된 사례는 5건으로 충남대산석유화학단지 지역교섭(2021년 6월 17일), 전남여수화학단지(2021년 4월13일 합의), 제주지역BCT운임 지역협약(2021년 6월9일), 광양항 배후단지 지역협약(2020년 4월4일 합의), 부산항 배후단지 지역협약(2020년 5월29일 합의)

4. 사례: ② 화물연대 초기업교섭 배경

· 5개 지역 교섭구조
· 운수사업자, 화주의 공동사용자교섭

구분	사용자 교섭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운수사업자)** 대산석유화학단지 컨테이너 운송 운수사업자 : 삼익물류, 동방, 한진, 한익스프레스, 3HKTC, 신영운수, 동국상운, 롯데글로벌, 판토스, 한백뉴로택 (10개사) **화주는 교섭결과 인정**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운수사업자)** 코레일로지스, 롯데첨단, 동국상운, 삼덕물류, 한익스프레스, 백운운수, 조운종합물류, 코리아브이, 신영운수, 세양물류, 동특물류, CJ대한통운, 삼익물류, 씨티물류, 로비스, YTC, 중원로지스, 유니온, 롯데글로벌로지스 (19개사)
부산항	**(화주)**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62개사) **(운수사업자)** 부산신항직접운송협의회 (47개사)
광양항	**(화주)** 한일시멘트(주) **(운수사업자)** 한일시멘트 운송 7개 운수업체
제주BCT	**(화주)** 쌍용시멘트, 한라시멘트, 삼표시멘트

4. 사례: ② 화물연대 초기업교섭 결과

조항	내용	비고
조합활동 보장	화물연대의 각종 회의, 집회, 행사참석 등을 방해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조
수급조절	회사는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차량의 증차 또는 감차가 필요할 경우 기존 근무하던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며 차량수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사에 소속된 조합원들과 협의한다. 단 소속조합원들과 협의가 안될 경우 대산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안전운임 보장	1. 회사는 2021년 3월5일부터 2021년 대산석유화학단지 수, 출입 컨테이너와 안전운입협약서를 적용한다. 2. 회사는 제3조 안전운임 보장 1항에 따라 미지급 차액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컨테이너 안전운임 협약서는 안전운임 유가변동이 반영 되었을 경우 적용한다	제3조
부대합의사항	대산항, 대산-팽택, 평택-인천, 부곡-인천, 신항-내항, 씨벌크, 본석작업 별 적용사항 별도 합의	제4조
협약기간과 갱신	본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한 후 갱신 체결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도 갱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기존 본 협약의 효력도 유지된다.	제8조
보충협약	회사와 화물연대는 부대조항 1번 적용항목인 기점운임, 거리별 운임에 대해서도는 화주상사로부터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보충협약을 진행한다.	제10조

4. 사례: ② 화물연대 초기업교섭 시사점

1) 교섭의 성과

- 노조조직화 성과가 뚜렷. BCT부문 150명 ->400명 증가 , 광양지부도 302명에서 703명으로 조합원이 크게 늘어남
- 안전운임제도의 지역별 교섭 유형

2) 시사점

- 안전운임제를 특고, 플랫폼에 공공수수료 제도로 발전
- 원하청 공동사용자교섭의 가능성

3) 과제

- 일몰제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다른 화물로의 확대(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과 등 제도정비

4. 사례: ③ 건설노조 초기업교섭 배경

- 건설노조 조합원 6만 면 중 건설기계분과는 약 2만 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음
- 토목건축분과의 경우 중앙교섭이후 지역별(서울경기, 대전충청, 전주전남 등)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레미콘 조합원 수는 약 5000명으로 2019년 이후 재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사례지역인 부산건설기계와 경남건설기계(창원)지부는 모두 전략조직화 사업장
- 부산지역사례가 창원지역으로 전파되고, 이후 경남 서부, 통영시, 거제시로 확산되어 나타남
- 사업자협회(지역의 레미콘 회사 연합회)와 처음부터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사업자협회가 교섭에 응함
-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교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4. 사례: ③ 건설노조 초기업교섭 결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노조)와 경남레미콘창원협의회(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운송료
- 지입차 운송단가 4천원 인상 및 2021년 3천원 추가인상,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2020년 4월30일 기준 각사 운송 단가에 4천원 인상에 합의한다.
-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2021년 4월30일 기준 각사 운송 단가에 3천원 인상에 합의한다. 2020년도 계약완료한 제조사에 한에서 2021년도 단체협약은 없다
2. 복지기금
- 2020년 5월 1일부터 회사는 레미콘산업 발전 및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노조복지기금을 20인 이하 20만원, 20인 초과는 20만원에 1인당 1만원을 추가하여 매월 분회(상조회)에 지급한다.
3. 자가용 기사 임금
- 회사는 자가용 기사 조합원 수당을 12만5천원 인상한다. 인상금액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한다.
- 임금인상은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없다.
4. 기타수당
- 기타수당은 2020년 4월30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가인상은 2022년 4월 30일까지 동결한다.
5. 회사는 노조 분회장 및 간부, 조합원(한도 3명) 등이 노조를 대표하여 근무시간 중에 총회, 각종 회의,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1년 중 3일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일 하루 평균 회전수를 각각 지급한다.
6. 회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전보, 배치전환, 휴직, 징계, 해고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일반도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7. 위 협의된 내용은 2020년 5월1일자로 소급적용한다.
8. 본 협약서 외에 각 사별로 추가협상은 없다

4. 사례: ③ 건설노조 초기업교섭 시사점

1) 교섭의 성과

- 전략조직화 사업이 초기업교섭의 성과로 귀결된 사례
- 지역 내 통일적인 노동조건 형성에 기여
- 확산 효과가 뚜렷함. 2020년 부산, 창원의 합의가 2021년 통영, 거제, 경남 서부로 확산됨

2) 시사점

- 지역별 초기업교섭의 가능성 확인
- 사업자단체(레미콘사업자협회)의 사용자단체 역할

3) 과제

-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과 등 제도정비

연구결과

<표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초기업교섭 사례 종합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등 5개 지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경남건설기계지부
교섭형태	공동교섭	지역별 집단교섭	지역별 집단교섭
사용자	㈜우아한청년들	화주 및 운수사업자(부산, 광양) 운수사업자(대산, 여수), 화주(제주BCT)	지역의 레미콘사업자단체
협약	단체협약	안전운임협약(임금협약)	운송운임협약
적용대상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 1만 3,000명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의 지역 (인근지역 포함)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보충협약	있음	없음	없음
협약유형	표준협약	표준협약	표준협약
효력	배민커넥터를 제외한 비조합원까지 적용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과제	배달 전체 산업별 협약으로의 확장, 사용자에 교섭의무 부여 등	안전운임제의 지속, 사용자에 교섭의무 부여, 보충교섭이 필요한 지역 발굴 등	사용자에 교섭의무 부여 등

주 :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

연구결과

- 초기업교섭의 영향요인은 전략조직화, 중앙수준의 협의구조, 사회적 대화 등
- 초기업교섭의 성과는 조직화, 노동조건의 통일성과 상향, 초기업교섭의 확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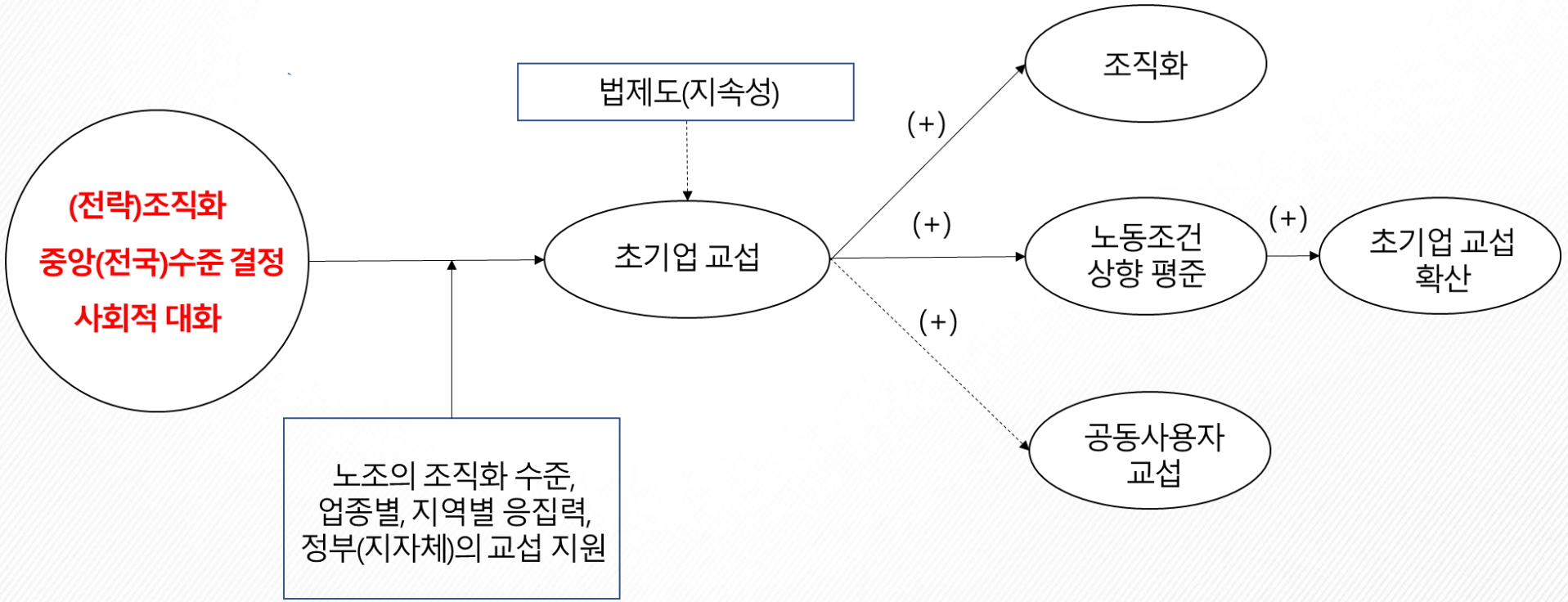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